

# 기안용지

분류기호 분류번호	0911332-	(원화번호 75-1943)	신청구분 그 주 크 국 당 전 경 사 장
차리기장	공고제 29호		
시행일	1975. 1. 24		
보존년한			
보조 기 과	공영과장	법무담당관 (공모안심사)	
	공영사업계장	사민과장	
		부서관리계장	
기 안 내 용 요 구	1975년도 서울특별시 영세기업 육성자금 집행요령 개정		



공 수 일 수	각 안 1건	공 공 인 사	1975. 1. 24
------------------	--------	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

1975년도 서울특별시 영세기업 육성자금 집행요령 개정  
제안 내부결재

1. 상공부과 제 10496호 (74.2.4) 중소기업 육성자금  
운용요강 제13호 및 동부과 1332-99 (75.1.24) 1975년도  
영세기업 육성자금 운용세부지침에 의거 75년도 당시 영세기업  
육성자금 집행요령을 다음 공고안과 같이 개정 공고 시행코리  
합니다.

해당부과 제 10496호 (74.2.4) 중소기업 육성자금  
운용요강 제13호 및 동부과 1332-99 (75.1.24) 1975년도  
영세기업 육성자금 운용세부지침에 의거 75년도 당시 영세기업  
육성자금 집행요령을 다음 공고안과 같이 개정 공고 시행코리  
합니다.

공고안심사	1975. 1. 24	제 29호	
심판자	법정재판	법원장	
판결	판결	판결	

서울특별시 공공고제 29호

1975년도 서울특별시 영세기업 육성자금 집행요령 개정  
상공부과 제 10496호 (74.2.4)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요강 제13호  
및 동부과 1332-99 (75.1.24) 1975년도 영세기업 육성자금 운용세부지침에 의거 75년도 당시 영세기업  
육성자금 집행요령을 다음 공고안과 같이 개정 공고 시행코리  
합니다.

다음과 같이 영세기업 대상자를 집행요령 중의 다음과 같이

개정 하고 한다.

### 제 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1975년도 사업종결시 영세기업 대상자를 집행요령 중의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### 3. 용과 대상 영종 및 지원 우선 영종

제조업에 한하여 다음영종에 우선지원한다

가 생활 필수품 생산 영종

나 수출품 생산 영종

다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계열화 협력

제 6항 나. 종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나. 용자 기간 (1) 시설자금 : 5년 이내 (2번이내 거치기간 포함)

(2) 운전자금 : 3년 이내 (1번이내 거치기간 포함)

제 9항 가. 바. 마. 람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구령 (소)장은 75. 3. 5 까지 2번이내 영세기업체

대상으로 사전 수출 희망 영종을 조사하여야 한다

나 구령 (소)장은 2번이내 영세기업체 명단과 전 가. 나. 바. 람이

의거 조사된 수출 희망 영종 명단을 다음 요령에 의거

집행요령을 선정하여 75. 3. 15 까지 관련 주관부서

에 제출하여야 한다



제3안

수신 상광부 장관

참조 농안용기별화장

제목 등 건

1. 75년도 당시 영세기업 육성자금 집행요령을  
별첨과 같이 개정공고 하겠기 보고합니다.

첨부 서울특별시 공고 제 1부 끝

제4안

수신 국민은행장

참조 영영무장

제목 등 건

1. 75년도 당시 영세기업 육성자금 집행요령을  
별첨과 같이 개정공고 하였으니 영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 서울특별시 공고 제 1부 끝

제5안

수신 수신리창고

제목 등 건

1. 75년도 당시 영세기업 육성자금 집행요령을  
별첨과 같이 개정공고 하였기 영우하오니 영우에 참고하시기  
바랍니다.

첨부 서울특별시 공고 제 1부 끝

수신 서울특별시 14개 구청을 함 이상 . . . . .

(기밀)

